

의안번호	제 174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1월 4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74
----------	-----

제출연월일 : 2023년 1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비농업인의 농업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충북형 도시농부 등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충북형 도시농부의 참여시간, 선정 및 교육 (안 제4조~제6조)
- 충북형 도시농부 인력지원 대상 (안 제7조)
- 지원사업 추진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안 제8조)
- 참여자 및 농업경영체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 (안 제9조)
-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회수 등 (안 제10조)
- 농업 관련 기관 등과의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안 제11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농업인의 농업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비농업인”이란 농업경영을 하지 않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유휴인력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4. “충북형 도시농부”란 충청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지원한 비농업인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비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 참여자의 원활한 모집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시간) 충북형 도시농부의 농업활동 참여시간은 1일 4시간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을 받는 자와 협의하여 1일 4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충북형 도시농부 선정 등)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신청을 받아 충북형 도시농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충북형 도시농부는 제6조에 따라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기준·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실시)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충북형 도시농부를 대상으로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인식 개선, 농업활동 과정에서의 효율적인 농업활동 참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효과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인력지원 대상 등) ① 충북형 도시농부의 인력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농업경영체

2. 그 밖에 도지사가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지역의 낙후도, 농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인력지원 대상(이하 “농업경영체등”이라 한다)에 대한 우선 지원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농업경영체등은 중복형 도시농부의 안전한 농업활동 참여에 필요한 근로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장·군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등이 지급하는 인건비
2. 농업활동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
3. 농업활동 및 교육 참여에 따른 여비·수당 등 실비(實費)
4. 사업 전담인력 고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홍보물 제작·구입비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인건비 보조 등) ① 시장·군수등은 농업경영체등이 농업활동에 참여한 중복형 도시농부(이 조 및 제10조에서 “참여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등은 참여자 및 농업경영체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참여자의 실제 농업활동 참여 여부와 농업경영체등의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등은 참여자에게 농업활동 및 교육 참여에 따른 교통비, 교육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등은 참여자의 농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건비와 실비의 지급기준, 금액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군수등은 참여자 및 농업경영체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와 실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해당 참여자 및 농업경영체등(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농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력 대상 기관과 참여자 모집, 홍보, 교육 및 그 밖의 사업 지원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 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이하 “지방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소관 지방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2. 비용 발생 요인

- 참여자 인건비의 일부, 보험 가입비, 실비 등(조례안 제8조)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6조(교육실시)
- 조례안 제7조(인력지원 대상 등)
- 조례안 제8조(사업지원)
- 조례안 제9조(인건비 보조 등)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요인 :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에 관한 소요예산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 계 결 과 : 695억원(도비 215, 시군비 480)
- 재원조달방안 : 도비, 시군비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함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민영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세 입							
세 출	69,520,000	3,116,000	9,041,000	13,361,000	22,001,000	22,001,000	
인건비, 교통비 등	69,520,000	3,116,000	9,041,000	13,361,000	22,001,000	22,001,000	
재원 조달							
도비	소 계	21,528,000	976,800	2,796,300	4,134,300	6,810,300	6,810,300
	보조금	21,528,000	976,800	2,796,300	4,134,300	6,810,300	6,810,300
시군비	소 계	47,992,000	2,139,200	6,244,700	9,226,700	15,190,700	15,190,700
	보조금	47,992,000	2,139,200	6,244,700	9,226,700	15,190,700	15,190,700
기 타 (차입금 만자 예비비 등)							

※ 추계 결과 : 69,520백만원(도비 21,528, 시군비 47,992)

- '23년 : 1,000명 육성 / 3,116백만원(도비 977, 시군비 2,139)
- '24년 : 2,000명 육성 / 9,041백만원(도비 2,796, 시군비 6,245)
- '25년 : 3,000명 육성 / 13,361백만원(도비 4,134, 시군비 9,227)
- '26년 : 5,000명 육성 / 22,001백만원(도비 6,810, 시군비 15,191)
- '27년 : 5,000명 육성 / 22,001백만원(도비 6,810, 시군비 15,191)

※ 인건비 24천원, 교통비 및 보험료 11천원, 교육실비 20천원 등